



2. 관련법규

- 도시계획법(제75조, 제76조, 제77조의2)
- 도시계획법시행령(제58조의2, 제58조의3, 제60조, 제65조)

3. 주요골자

-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22인이내(안 제4조 제1항)
- 위원회는 시의회의원,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학식이 있는 자로 하되 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3분의 2이상(안 제4조 제3항)
- 시의회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가능(안 제4조 4항)
- 소위원회의 위원을 3인이상 5인이하에서 5인이상 9인이하로 함.(안 제8조 제2항)

4. 개정조례안

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

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1항중 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”를 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이내의 위원으로”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중 “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”를 “시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”로 한다.

③ 위원은 대구직할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의회의원,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
제8조 제2항중 “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”을 “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5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대구직할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8조 ① (생략)</p> <p>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~⑤ (생략)</p>	<p>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위원은 대구직할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의회의원,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④ 시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제8조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....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.....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

6. 기타 참고자료

가. 관계법령 발췌

도시계획법

제75조(지방도시계획위원회) ①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·도지사의 자문(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의 도시계획에 관하여는 제외한다)에 응하게 하며 중앙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

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(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)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(이하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〈개정 91. 12. 14〉

②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(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제외한다)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)의 자문에 응하며,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및 구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. 〈개정 91. 12. 14〉

제76조(운영세칙) 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지방위원회·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〈개정 91. 12. 14〉

제77조(위원등의 수당 및 여비) 중앙위원회·지방위원회·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에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〈개정 91. 12. 14〉

제77조의2(도시계획상임기획단)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와 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·지도 및 조사·연구를 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. 〈본조신설 81. 3. 13〉

#### 도시계획법시행령

제58조(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의 조직등) ① 소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82. 10. 23, 91. 5. 11〉

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〈본조신설 73. 3. 21〉

제58조의2(지방도시계획위원회) 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〈개정 82. 10. 23, 92. 7. 1〉

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부시장이, 도에 있어서는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시·도의회의원·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시·도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
〈개정 92. 7. 1〉

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⑤ 시·도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〈개정 92. 7. 1〉

⑥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,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58조의3(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) 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법 제72조 제2항 및 이 영 제58조의 규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. 〈본조신설 88. 2. 16〉

### 5. 大邱直轄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

#### 1. 審査過程

- 提出日字：1993年 8月 26日
- 提出者：大邱直轄市長(都市計劃局長)
- 上程：第24回 大邱直轄市議會(臨時會)
  - ┌ 第1次 建設委員會(9. 8.)上程
  - └ 第1次 建設委員會(9. 8.)議決

#### 2. 提案說明 要旨

(提案說明者：都市計劃局長)